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37호 2021. 12. 29.(수)</p>	
---	--	---

선 결	기관 의 장

조 례

제2687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6
제2689호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15
제269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2691호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
제2692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2693호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2694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2695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3
제2696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2697호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2698호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87

규 칙

제132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상 인용조문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95
--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87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대상 주민수에 관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대상 주민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190명 이상이어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p>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31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 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인용 조문 변경함(안 제1조·제2조)

1) 「지방자치법」 제16조 ⇒ 「지방자치법」 제21조

나. 법령 위임범위에서 감사청구인 수 기준 변경(안 제2조)

1) 기준: 190명 ⇒ 150명

2) 근거: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가) 예고기간: 2021. 11. 9.~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 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제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3조(「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42조제1항”를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를 “「지방자치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반 설치조례」의 개정) 거창군 반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8조(「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9조(「거창군 공인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 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3조(「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반 설치조 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 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6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4조(「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5조(「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로 한다.

제17조(「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18조(「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한다.

제19조(「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20조(「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21조(「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와 제120조”를 “법 제131조와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을 “법 제117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42조제2항 단서”를 “법 제51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2조(「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4조(「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의2 중 “영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5조(「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호, 제19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과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 6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를 “부군수와 거창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제26조(「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조 제목 “(군수의 책무)”를 “(군수와 의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27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28조(「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3항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2호·제3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9조제3항, 제11조, 제12조 중 “군수”를 “군수와 의장”으로 한다.

제29조(「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창군수”를 “거창군수와 거창군의회 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
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32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른 관련 용어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제때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인용된 조문 변경(안 제1조~제24조)

- 1) 24개 조례
- 2) 위임 조문 변경
- 3) 「지방자치법」 전반

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5조~제29조)

- 1) 5개 조례
- 2) 군수 ⇒ 군수와 의장
- 3) 「지방자치법」 제10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11. 10.~11.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89호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 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든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앞쪽)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용

(뒤쪽)

※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 이용목적	의견제출 검토
보유기간	5년
수집 · 이용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의견제출 검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0g/㎡]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제출일자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1-133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와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3조)

1) 대상: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

2) 제외: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다.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의 보완요구 등을 정함(안 제4조·제5조)

1) 방법: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서 작성·제출

2) 보완요구: 제출된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사항·기간 표시

라. 의견의 검토 및 처리를 정함(안 제6조)

1) 규칙의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된 의견서를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 거쳐 검토

2) 검토 결과를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통보

마. 의견의 반영과 차별대우의 금지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1) 의견제출이 타당하면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2) 주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됨

바.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가) 예고기간: 2021. 11. 11.~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9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와 제134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20조”를 “법 제134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8명”을 “7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4명”을 “776명”으로 하고 제2호 중 “14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0조·제13조·제16조·제19조·제22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의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③ (생략)</p>	<p>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의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수도과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p>	<p>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상수도과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p>	<p>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p>	<p>제19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업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읍·면)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읍·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p>	<p>제22조(읍·면) 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78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64명</u> 2. 의회사무기구 정원: <u>14명</u></p>	<p>② (생 략)</p> <p>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93명</u>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 정원: <u>776명</u> 2. 의회사무기구 정원: <u>17명</u></p>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93 778	358 350	17 14	149 157	75 72	74 85	41	43 44	185 172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56 742	352 344	17 14	119 128	45 43	74 85	40	43 44	185 172
	4급	4	3		1		1			
	4~5급	1							1	
	5급	38	15	3	6	4	2	3		11
	6급 이하	713 699	334 326	14 11	112 121	41 39	71 82	37	42 43	174 161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7 6	3		3 2	3 2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증원 15명

나. 관련조문: 제25조(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 비	634	634	634	634	634	3,170

3. 관련 의견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시책 및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행정업무 효율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2년 인건비: 634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 규 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34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가시책과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 반영 및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15명: 778명 ⇒ 793명(안 제25조)

- 1) 집행기관의 정원: 증12명(764명 ⇒ 776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증3명(14명 ⇒ 17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14명
 - 가) 현행: 699명(본청326, 의회11, 직속기관121, 사업소37, 읍43, 면161)
 - 나) 변경: 713명(본청334, 의회14, 직속기관112, 사업소37, 읍42, 면174)
- 2) 연구직(연구사) 정원: 증1명
 - 가) 현행: 6명(본청3, 직속기관2, 사업소1)
 - 나) 변경: 7명(본청3, 직속기관3, 사업소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제38조
- 나. 예산조치: 2022년 예산 1차 추경 634백만원 확보예정
-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1. 2.~11.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91호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군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과의 협력)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대상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4조(사업범위 및 비용분담), 제5조(재정 지원)

나. 비용발생 요인

- 1)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
- 2)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교육청 250백만원 별도 예산 편성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비	250	250	250	250	250	1,25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1백만원
2. 마을교사 양성 운영: 61백만원
3. 마을학교 운영: 188백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1-135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 업무협약으로 지정된 행복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교육공동체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1) 행복교육지구: 군과 교육청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나. 교육장과 협력하여 매년 사업계획 수립(안 제3조)

다. 사업범위 및 비용분담을 정함(안 제4조)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등

2)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군과 교육청의 업무협약에 따라 조정·분담

라.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5조)

마. 학교 등과의 협력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25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0. 6.~10.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92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
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142조</u>에 따라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159조</u>에 따라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① “아립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립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p> <p>② “아립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립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립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아립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립예술제위원회(아립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p>
<p><u>제4조(기금의 존속기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u>제4조(기금의 존속기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u>제13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 제></u></p>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아림예술제 행사 등에 지원

나. 관련 조문: 제6조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림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림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출	군비	5	5	5	5	5	25

3. 관련 의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아림 예술제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기금조성액: 500백만원
2. 이자수입 5백만원: 아림예술제 행사 등 지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36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아림예술제 지원을 위해 1996년에 설치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목적인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안 제1조)

1)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1)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2)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

다. 법령 중복·재기재 규정 삭제(안 제13조)

1)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3조 재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기금 500백만원 중 이자 5백만원 예산편성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0. 7.~10.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목재문화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93호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황산리 813-2번지”를 “송계로 487”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체험료 등 지원) ①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재료비,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군 소재 학교 등에 소속된 보육교직원·교직원 및 영유아·유아·학생
 -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군 지역 이장 및 반장
 3. 군 소재 기관·단체 임직원
 4. 3세 이상 13세 이하 자녀와 군에 주소를 같이 두는 세대
-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위천면 <u>황산리 813-2번지</u>에 둔다.</p> <p>제10조(체험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별표 1에 따른 단체요금으로 감경할 수 있다.</p> <p>1.~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조(위치)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위천면 <u>송계로 487</u>에 둔다.</p> <p>제10조(체험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별표 1에 따른 단체요금으로 감경할 수 있다. <u>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u></p> <p>1.~6. (현행과 같음)</p> <p>7. 「<u>한부모가족지원법</u>」 제4조에 따른 <u>한부모가족</u></p> <p>8.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에 따른 <u>다문화가족</u></p> <p>9. <u>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u></p> <p>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15조(체험료 등 지원) ①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재료비,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군 소재 학교 등에 <u>소속된 보육교직원·교직원 및 영유아·유아·학생</u></p> <p>가. 「<u>영유아보육법</u>」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p> <p>나. 「<u>유아교육법</u>」 제2조제2호에 <u>따른 유치원</u></p> <p>다. 「<u>초·중등교육법</u>」 제2조 각</p>

호의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군 지역 이장 및 반장

3. 군 소재 기관·단체 임직원

4. 3세 이상 13세 이하 자녀와 군에
주소를 같이 두는 세대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별표 1]

체험프로그램 체험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작품 1점당)

구분	체험시간	체험료		추가 요금	
		개인	단체 (20명 이상)		
대품 (기계작업)	<u>3시간 기준</u>	3,000	2,000	<u>시간당 1,000원</u>	<u>최대 6,000원</u>
중품 (공구작업)	<u>3시간 기준</u>	2,000	1,500		<u>최대 4,000원</u>
소품 (단순작업)	<u>3시간 기준</u>	1,000	500		<u>최대 2,000원</u>

비고

1. 정규프로그램 외의 특별프로그램 요청 시 체험료 별도 부과
2. 체험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
3.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
4. 이용객 중 인솔자(부모 포함)는 무료 입장
5.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지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1) 체험료, 재료비, 강사료 등 지원: 교직원 및 학생, 이장 반장, 기관·단체 임직원, 3세 이상 13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2) 나무장난감 무료대여: 나무장난감 구입 및 관리비

나. 관련 조문: 제15조(체험료 등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지원액 \ 연도	2022년도
군비	71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친환경 맞춤형 선도자 목공체험과정: 48백만원
2. 나무장난감 구입 및 관리: 23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37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마을 이장,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등에게 거창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목재에 관한 지식 습득 및 목재의 중요성을 알려 목재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험료 감경대상 확대함(안 제10조)

- 1)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 2)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나. 체험료 등 지원 신설함(안 제15조)

- 1) 범위: 체험료, 재료비, 강사료 등, 나무장난감 무료대여
- 2) 대상: 학교 소속 교직원 및 학생, 이장 및 반장, 기관·단체 임직원, 3세 이상 13세 이하 자녀와 주소를 같이 두는 세대

다.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기준 변경(안 별표 1)

- 1) 기준시간: 4시간⇒3시간
- 2) 1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최대한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71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0. 25.~11. 1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일부반영(안 제10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94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3호”를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군”을 “군”으로 각각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노인복지, 양성평등”을 “노인복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조 및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문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기금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생략) <p>제6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①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기금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현행과 같음) <p><삭 제></p>

현행	개정안
<p>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p> <p>5.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p> <p>6. 그 밖에 양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지원은 제외한다.</p>	
<p>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6.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u>거창군</u>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u>거창군</u>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6.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u>군</u>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u>군</u>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p> <p>1. 노인복지계정</p> <p>2. 양성평등계정</p> <p>3. 자활계정</p> <p>②~④ (생략)</p>	<p>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p> <p>1. 노인복지계정</p> <p><삭제></p> <p>2. 자활계정</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③ (생략)</p> <p>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1. <u>노인 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u></p> <p>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p> <p>⑤ (생략)</p>	<p>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1. <u>노인 복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u></p> <p>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p> <p>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자활계정의 용도

나. 관련 조문: 제5조 및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비	노인 복지 계정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자 활 계 정	75,950	75,950	75,950	75,950	75,950	379,75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기금조성액: 2022년도 기금 2,414,958천원

2. 이자수입액: 86,750천원

가) 노인복지계정: 10,800천원

1)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 10,800천원

나) 자활계정: 75,950천원

1) 자립역량교육지원 19,950천원

2) 자활한마당참가지원 7,000천원

3)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4,000천원

4)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환경개선 5,000천원

5) 민간융자금 40,000천원 × 1개소=40,0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38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설치목적은 달성한 양성평등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제2조)

- 1)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2021. 12. 31. ⇒ 2026. 12. 31.
- 2)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다. 양성평등기금 폐지(안 제1조·제2조·제4조·제6조·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2)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나. 예산조치: 2022년도 기금 2,415,958천원 중 이자 86,750천원 예산편성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1. 3.~11.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95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거창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해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1. 지속가능발전 방향 및 정책의 제안·자문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교통과장,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환경, 경제, 보건,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 역량과 의지가 있는 사람
2.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창군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등) ①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104
----------	----------

발의일자	2021. 11. 30.
발 의 자	권순모, 김종두, 최정환,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김향란,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의원

1. 제안 이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다. 협의회 구성을 정함(안 제4조)
-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를 정함(안 제7조·제8조)
- 바. 운영위원회 등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속가능발전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2. 1.~12.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96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기존 제4조)제1항 중 “공무원”을 “군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 이내로”를 “3년으로”로 한다.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기존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2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기존 제7조) 제6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2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기존 제7조의2)제3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제7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제7호·제8호”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6조로 하며,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보존)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 조 제목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2. 상주감리: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준용

제29조제3항 중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거창지역건축사회”를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지역건축사회”로 “득하여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32조 조 제목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왼쪽굽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8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제4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으로 “구역”을 “구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란” 건축물의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를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5조(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③ (생략)</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p>1.~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p> <p>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2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다.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p>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2. (생략)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7조(회의) ①~⑤ (생략)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신설>

제7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제7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③ (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생략)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8조(회의)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제7호·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현행과 같음)

<삭제>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사항과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전통문화 보존지역안의 건축물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4호 따른 도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면적 :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 100분의 115이하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1·2층 근린생활시설에 한정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보존)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삭 제>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완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 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 설>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 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 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⑤ (생략)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 (생략)

③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거창지역건축사회(이하 “거창건축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재·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지정·통지

른 “조례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2. 상주감리: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준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지역건축사회(이하 “거창건축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재·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지도원) ①~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기초 침하, 왼쪽급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8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건축지도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6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란” 건축물의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4배”를 말한다.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제31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합계	검사대행에 드는 시간	
	현행	개정안
330제곱미터 미만	<u>2시간</u>	<u>4시간</u>
3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u>3시간</u>	<u>5시간</u>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u>4시간</u>	<u>6시간</u>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u>5시간</u>	<u>8시간</u>
1만제곱미터 이상	<u>6시간</u>	<u>10시간</u>

비고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위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에 드는 시간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기술사 1명의 시간당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
2. 수수료 지급 기준(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 가.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20퍼센트
 - 나.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 다.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 라.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39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농업인의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에 농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위임근거 법령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법제처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 조문 순서 변경함
(안 제4조~제10조)
- 다. 「건축법」 등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용어 변경, 삭제조항 정비함
(안 제4조·제21조·제28조의2·제41조의2))
- 라. 법령 중복·재기재 등 삭제(안 제11조·제17조)
- 마. 가설건축물에 농막 추가함(안 제26조제2항제6호)
- 바. 건축물의 정기점검·긴급점검 정비(안 제32조제1항·제2항)
 - 1) 위임근거 변경: 「건축법 시행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2) 수시점검 ⇒ 긴급점검
- 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반영(안 제4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제20조·제35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5조·제23조의2,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28.~10.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97호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제5조·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앞의 “제2장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조 조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운영주체”를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창군의회 의장이”를 “거창군의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의 “제3장 유통센터 위탁”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

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주체”를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조 제목 “(운영주체 선정)”을 “(수탁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본문(종전 제1항) 중 “때”를 “경우”로 “운영주체”를 “수탁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

1.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의무 및 보고
5. 군수의 관리·감독
6. 계약해지 사유
7.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제20조·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앞의 “제4장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 중 “운영주체”를 “수탁자”로 한다.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5장(제33조 및 제34조)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적용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탁협약 시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거점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수집·선별·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p> <p>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p> <p>3. “운영주체”란 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p> <p>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p>	<p><u>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p> <p><삭 제></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삭 제></p> <p>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p> <p><삭 제></p> <p>2.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제3조(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등)</p> <p>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p>

현 행	개정안
<p>에 둔다.</p> <p>제5조(설치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군수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제2장 유통센터운영위원회</p> <p>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주체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p>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7조(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위탁

현 행	개정안
<p>2.~4. (생략)</p> <p>제8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u>자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생략)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u>자</u>(3명 이내에 <u>한한다</u>) 4. (생략)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3장 유통센터 위탁</p> <p>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 	<p>취소에 관한 사항</p> <p>2.~4. (현행과 같음)</p> <p>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u>사람으로</u>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현행과 같음) 3. 함양·합천군수가 추천하는 <u>사람</u> (3명 이내에 <u>한정한다</u>) 4. (현행과 같음)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제15조(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 용료)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p>

현행	개정안
<p>한 법인</p> <p>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p> <p>4. 제1호의 생산자단체,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p> <p>5.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p> <p>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p> <p>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p> <p>제16조(위탁신청) 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제17조(운영주체 선정) ① 군수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 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회의 동의를 받아</p>	<p>비의 이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16조(위탁신청) 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p>제17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 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 행	개정안
<p>야 한다.</p> <p><u>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u>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운영주체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u>제20조(이용료)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u></p>	<p><u>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의무 및 보고 5. 군수의 관리·감독 6. 계약해지 사유 7.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현 행	개정안
<p>의 5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② 운영주체는 매년 12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장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p>	<p><삭 제></p>
<p>제21조(사업연도) 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거창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삭 제></p>
<p>제22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생략)</p>	<p>제22조(장부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운영방법)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3조(운영방법) 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농산물의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4조(취급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p>	<p>제24조(취급물품의 제한) 수탁자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p>

현 행	개정안
<p>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p> <p>제25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기계, 물류기기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p> <p>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보수·장비의 유지, 개·보수,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설물 및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p> <p>제26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p> <p>제27조(시설변경 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p>	<p>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정안
<p>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u>제28조(시설반환)</u> 운영주체는 위탁기간의 만료, 위탁의 취소,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p>	<p><삭 제></p>
<p><u>제29조(휴·폐업 허가)</u> ① 운영주체가 휴업을 하려는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가 폐업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삭 제></p>
<p><u>제30조(업무대행)</u>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u>제31조(보고 및 검사 등)</u>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원물 확보, 마케팅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주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p>	<p><삭 제></p>

현 행	개정안
<p>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32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p>제5장 보칙</p> <p>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유통센터의 위탁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p> <p>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140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거창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근거를 둠(안 제3조제1항)

다. 법령 등 중복·재기재 및 위배 사항 삭제(안 제5조·제6조, 제19조~제21조, 제25조~제33조)

1) 조례 재기재: 수당, 위탁 시 의회 동의

2) 법령 재기재: 위탁자에 대한 경비지원, 시설 설치 및 변경, 사업 연도,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권리양도의 제한, 시설변경 금지, 시설반환, 보고 및 검사, 지도·감독 등, 준용, 시행규칙

3) 법령위배: 위탁의 취소, 휴·폐업의 허가, 운영주체에게 모든 책임 전가, 업무 대행

라. 법령 근거 인용법령 명시(안 제15조)

1) 내용: 운영의 위탁, 이용료

2) 근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기준충족을 위해 위탁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명시(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0. 18.~11.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조례 제2698호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거창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단체급식과 학교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3. “지역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등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등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등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연구
7.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급식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급식 지원대상)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학교급식 대상(다만, 같은 조 제1호 단서는 제외한다)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급식 대상

제8조(급식시설 지원 등) 군수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급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관리
4. 지역농산물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

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군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원센터의 운영(부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및 수탁자 선정 등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규모 결정, 급식시설 지원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 업무 관련 과장
2. 공공급식이나 지역농산물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학교급식비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시스템 유지 비용 등

나. 관련 조문: 제6조(공공급식 지원), 제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군비	2,747	2,747	2,747	2,747	2,747	13,735

1) 매칭비율 도비:군비 ≒ 1 : 3

2) 학생수는 매년 100명 정도 감소하지만, 식재료 단가인상에 따른 급식비 단가상승으로 매년 총급식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공공급식 공급학교 및 학생수: 51개소, 7,121명

구분	개소수	학생수
계	51개소	7,121
유치원(공립, 사립, 대안)	17개소(병설유치원 13개포함)	521
학교(초,중,고, 특수)	34개소	6,600

2. 급식비: 2,675백만원

가. 학교급식비 1,526백만원

나. 유치원급식비 249백만원

다. 우수농산물 지원 900백만원

3.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시스템 유지 비용 등: 72백만원

가. 시설보수 30백만원

나. 시스템 및 시설장비 유지 27백만원

다. 교육 및 위원회 15백만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1-141
----------	----------

제출연월일	2021.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건강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군에서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공공급식 지원계획, 지원 근거·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제8조)

- 1) 현물 지원 원칙: 우수농산물⇒지역농산물⇒타지역 우수농산물 순
- 2) 학교급식, 단체급식 대상
- 3) 급식시설 설치 비용 등 지원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을 정함(안 제11조)

마.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12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학교급식법」 제8조·제9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2,747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0. 28.~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상 인용 조문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2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상 인용조문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거창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법 제28조”를 “법 제35조”로 “법 제172조”를 “법 제192조”로 한다.

제2조(「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의 개정)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4조(「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규칙」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상 인용조문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88
----------	---------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규칙에 인용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제때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에 인용된 조문 변경(안 제1조~제5조)

- 1) 4개 규칙
- 2) 위임 조문 변경
- 3)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9조, 제12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제6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11. 10.~11.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28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91
----------	---------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국가시책과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 반영 및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증15명(안 별표 3)

1) 일반직 6급: 신설 및 조정(증감없음)

가) 사업소 (감1명): 행정·공업·시설

나) 사업소 (증1명): 행정·세무·공업·시설

다) 면 (감2명): 행정·사회복지·농업

라) 면 (증2명): 행정·전산·사회복지·농업

마) 본청·읍 (감2명): 사무운영·전기운영·위생·방호

바) 본청·읍 (증2명): 사무운영·토목운영·위생·방호

2) 일반직 7급: 증6명

가) 본청 7급(증2명):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나) 의회사무과 7급(증3명): 행정 2, 행정·세무·농업 1

다) 보건소 7급(증1명): 행정·보건 1

라) 보건소 7급(감4명): 간호 3, 보건·의료기술·간호 1

마) 읍 7급(증1명): 간호 1

바) 읍 7급(감1명): 행정·사회복지 1

사) 면 7급(증4명): 간호 2, 행정·사회복지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3) 일반직 8급: 증6명

가) 본청 8급(증5명): 행정 1, 행정·세무 1, 행정·녹지 1, 행정·공업·환경 1, 행정·공업 1

나) 농업기술센터 8급(증1명): 행정·농업 1

다) 보건소 8급(감8명): 보건·간호 2, 사회복지·간호 2,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 라) 읍 8급(감1명): 행정·사회복지 1
- 마) 면 8급(증9명): 행정·사회복지 1, 보건·간호 2, 사회복지·간호 2,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 4) 일반직 9급: 증2명
 - 가) 본청 9급(증1명): 행정·시설 1
 - 나) 농업기술센터 9급(증1명): 행정·농업 1
 - 다) 면 9급(증1명): 행정·사회복지 1
 - 라) 면 9급(감1명): 행정·사회복지 1
- 5) 연구직(증1명): 농업연구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제38조
-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5조·제27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2년 예산 1차 추경 643백만원 확보예정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1. 2.~11.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29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단위업무란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단위업무	사 무 명	전결권자					군수
			담 당		과장	소장	부군수	
			담당자	주사				
행복 농촌과	33. 감악산 향 노화웰니스 체 험장 조성 및 관리	1. 감악산 향노화웰니스 조성 계획수립	기안					○
		2. 감악산 향노화웰니스 체험장 기반조성	기안		○			
		3. 감악산 향노화웰니스 체험장 관리	기안		○			

별표 1의 읍·면 단위업무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업무	사 무 명	거 창 읍					면			
		담 당		과장	부읍장	읍장	담 당		부면장	면장
		담당자	주사				담당자	주사		

24. 주민 자치회	1. 주민자치회 구성									
	가. 위원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	기안				○	기안			○
	나.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기안				○	기안			○
	다. 위원 인적사항 공개, 위원관리 등	기안				○	기안			○
	2.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기안				○	기안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1-94
----------	---------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감악산 향노화웰니스 체험장 조성 및 관리와 읍면 주민자치회 단위 업무 전결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업무 전결 규정 신설(안 별표)

- 1) 감악산 향노화웰니스 체험장 조성 및 관리
 - 가) 군수 결재: 계획수립
 - 나) 행복농촌과장 전결: 기반조성 및 관리
- 2) 주민자치회: 읍장·면장 전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1. 2.~11.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30호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사전검토 안건 등이 생길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발언한 관계자 등에게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의안 번호	2021-96
----------	---------

제출일자	2021. 11. 22.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 이유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의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정함(안 제3조)

- 1)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소관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
- 2) 위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원 등 15명 이내

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1) 임기: 2년
- 2) 해촉사유: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다. 회의를 정함(안 제7조)

- 1) 정기회, 임시회
- 2)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함(안 제8조)

- 1) 기능: 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
- 2) 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마. 통합사례회의 운영을 정함(안 제9조)

- 1) 기능: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자문
- 2) 구성: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2,1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0. 29.~11.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규칙 제1331호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송자”란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해 공공급식 지원대상에게 우수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자”란 우수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3.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농산물

제3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중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수립된 지원계획을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신청서와 공공급식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공공급식 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공공급식 인원
4. 공공급식 경비 및 우수 식재료 총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경우에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지급
2. 그 밖의 지원대상자: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

③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및 유치원 등이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6조(공공급식 지원대상) 조례 제7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급식 지원대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9.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10.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1. 그 밖에 단체급식을 하는 단체·기관

제7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조례에서 정한 식재료를 군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 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보조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⑤ 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정기회의 시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월별 공공급식 공급가격 결정
- 2. 월별 지원센터 운영사항 점검과 불합리한 사유 발견 시 시정요구
- 3. 지원센터 운영인력, 집행, 경비 등 운영 전반
- 4.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수탁기관 관리자
 - 2. 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주사
 - 3.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영양사
 - 4.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 5. 군내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6. 군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 7. 군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④ 간사는 급식업무 담당자로 하고 발언권을 갖는다.

⑤ 회의는 매월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제10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해야 지원대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가 있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송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별도의 집하장으로 물품을 배송해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공공급식 관련 담당주사가 되며, 그 구성은 센터장이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상정의안 사전검토
2.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처리
3.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추진 점검
4. 식재료 공급단가 사전 조사 및 협의
5. 식재료의 품질, 규격 등의 협의
6.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제12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거창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1명
3. 학부모 대표 2명
4. 교원단체 1명

5. 농업인단체 1명
6. 생산자단체 1명
7. 학교 영양교사·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 2명
8. 시민단체 1명
9. 위탁 시 센터장 1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의 제척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4조(위원회 회의)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1-103
----------	----------

제출일자	2021. 11. 22.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공공급식 지원계획, 지원 대상·절차·결정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6조)
-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라. 공급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10조)
- 마.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안 제11조)
- 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제척사유, 회의를 정함(안 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
-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2,747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0. 28.~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훈령 제453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21-92
----------	---------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국가시책과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 반영 및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담당관(증1명): 8급 행정·세무 1

나. 문화관광과(증1명): 7급 행정 1

다. 행복나눔과(증1명): 7급 행정·사회복지 1

라. 환경과(증3명): 8급 행정 1, 행정·녹지 1, 행정·공업·환경 1

마. 건설과(증1명): 8급 행정·공업 1

바. 도시건축과(증1명): 9급 행정·시설 1

사. 의회사무과(증3명): 7급 행정 2, 행정·세무·농업 1

아. 농업기술센터(증3명)

1) 농업축산과(증1명): 8급 행정·농업 1

2) 농업기술과(증1명): 9급 행정·농업 1

3) 행복농촌과(증1명): 농업연구사 1

자. 보건소(감11명): (증1명) 행정·보건 1, (감12명) 7급 간호 3, 보건·의료기술·간호 1, 8급 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사회복지·간호 2, 행정·보건·간호 2

차. 거창읍(감1명): (증1명) 7급 간호 1, (감2명) 7급 행정·사회복지 1, 8급 행정·사회복지 1

카. 면(증13명): (증14명) 7급 간호 2, 행정·사회복지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8급 행정·사회복지 1, 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사회복지·간호 2, 행정·보건·간호 2, 9급 행정·사회복지 1 (감1명) 9급 행정·사회복지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나. 예산조치: 2022년 예산 1차 추경 634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21년 12월 29일

거창군 훈령 제454호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산림과 향노화란과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명	사무분장	분장사무
(경제산업국) 산림과	향노화	7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74. 향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75. 향노화산업 과제 발굴·지원 76. 향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7. 거창 향노화 힐링 특구 업무 78. 향노화산업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79. 향노화산업 관련 인력 육성 80. <u>감악산 향노화웰니스 체험장 조성 및 관리<삭 제></u>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진흥	1.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2. 마을만들기 관련 DB구축과 공유 3.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성

부서명	사무분장	분장사무
		4.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5.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6.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후관리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 유지관리 9. <u>감악산 향노화웰니스 체험장 조성 및 관리<신 설></u>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21-93
----------	---------

제출연월일	2021. 11. 23.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감악산 향노화웰니스 체험장 조성 및 관리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악산 향노화웰니스 체험장 조성 및 관리 업무 조정(안 별표)

- 1) 삭제: 산림과 향노화담당
- 2) 신설: 행복농촌과 농촌진흥담당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03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9.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1길 60-45 등 143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3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82-1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1길 60-45	20211229	20090401	중산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47-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2길 31	20211229	20090401	창남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156-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임실길 218-40	20211229	20090401	300여년 전에 경주 김씨가 마을을 이루었다하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85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1287	20211229	20091228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35	20211229	20090401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변경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98-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52	20211229	20090702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56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길 219-65	20211229	20190919	갈지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152-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763-19	20211229	20091228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06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동길 160-17	20211229	20120620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622-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동길 99	20211229	20120620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42-1, 104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18	20211229	2009070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 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4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70-93	20211229	20090401	운정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63-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2길 23	20211229	20090401	웅곡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에 녹물이 내려오므로 붙여진 행정리명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13-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51-5	20211229	20090401	중앙로를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0-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4길 52-7	20211229	20090401	거창읍 천내 가장 동쪽에 있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네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143	20211229	20091228	1994년 거창읍시가지 간선도로명 결정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17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38-3, 3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개금길 161-60	20211229	20090401	금이 많이 나왔다하여 개금이라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273-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772-120	20211229	20090401	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789-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정봉길 178	20211229	20090401	정봉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2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118-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1길 87	20211229	20091228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2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456-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492	20211229	20090702	거창군 가조면과 함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2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177-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룩1길 16	20211229	20091228	우룩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2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807-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오례길 171	20211229	20090401	조선 말 면우 곡종석이 연수사에서 공부할 때 붙였다고 전해지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2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407-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98-30	20211229	20090702	행정구역명(신원면+차황 면) 반영	건물번호 부여	
2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875-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하대길 29	20211229	20090401	한재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2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649-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소룡길 127	20211229	20090401	마을 뒤에 소룡산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27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777-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자하1길 7	20211229	20180502	거창부사 홍세영에 의해 붙여졌다고 전해지는 자연마을이름이 반영된 도로에서 분기되는 도로에 일련번호를 활용	건물번호 부여	
28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10-2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191	20211229	20090710	지리적 위치 반영 영남의 서부	건물번호 부여	
29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668-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219-41	20211229	20090710	지리적 위치 반영 영남의 서부	건물번호 부여	
3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산312-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연수사길 519	20211229	20090401	감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연수사의 이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6-1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608-17	20211229	20090702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안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3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717-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정봉길 159	20211229	20090401	정봉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향리 4-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주암길 223	20211229	20211201	마을 뒤편 소류지 우측 작은 산아래에 배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703-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가현길 148-8	20211229	20090401	고려때부터 있었던 가현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3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250-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당산말길 79-12	20211229	20090401	당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3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672-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항계들길 31	20211229	20090401	마을 둘레에 흩어 많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3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61-5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076-25	20211229	20090702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건물번호 부여	
3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286-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263-15	20211229	20090702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건물번호 부여	
39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15-2, 1415-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치내길 30-21	20211229	20090401	갈계의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4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88-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08-4	20211229	20091228	송계사를 지나 고계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4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노루고개길 279-36	20211229	20090401	노루고개길이라는 옛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4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358-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원농산길 63-33	20211229	20090401	400여 년 전에 창녕 성씨가 마을을 열었다고 하는 원농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39-5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693	20211229	20091228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건물번호 부여	
4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037-1, 1037-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수유길 104-3	20211229	20090401	마을 뒷산너머 개발골 골짜기 물을 끌어 넘겨서 농사를 지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5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1126-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임실길 218-84	20211229	20090401	300여년 전에 경주 김씨가 마을을 이루었다하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6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954-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249	20211229	20090401	보해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47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176-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2길 132-114	20211229	20090401	거기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4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리 1047-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학리길 270-9	20211229	20090401	행정구역명 학리를 이용하여 학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4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4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24-26	20211229	2009070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 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50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증촌리 2054-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1326-23	20211229	20091228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1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3길 50	20211229	20091228	정장길 시점으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5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5-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740-178	20211229	20091228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건물번호 부여	
5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723-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길 139-176	20211229	20090401	박유산의 동쪽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5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 125-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2길 150	20211229	20091228	솔숲이 울창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5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110-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4길 198-59	20211229	20090401	행정구역명 도리가 반영된 네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5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362-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101-65	20211229	20090401	창밖 숲사이로 비치는 달이 유난히 아름다워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57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359-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101-99	20211229	20090401	창밖 숲사이로 비치는 달이 유난히 아름다워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5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68-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1길 402	20211229	20090401	금귀봉 봉수대의 수비꾼이 거처하던 당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5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100-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빼재로 686	20211229	20091228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6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80-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구청림길 2-28	20211229	20090401	구청림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6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697-2, 산9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로 876-35	20211229	20091228	신원면 청수리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6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627-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38-60	20211229	20091228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다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6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64-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2379-1	20211229	20091228	행정구역 웅양을 이용하여 웅양로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6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382-1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194	20211229	20090401	창밖 숲사이로 비치는 달이 유난히 아름다워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65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514-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299-77	20211229	20090702	거창군 가조면과 함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6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683-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마항길 80-22	20211229	20090401	북상면 농산리와 위천면 강천리 사이의 말목고개 아래 자리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67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891-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517-374	20211229	20091228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68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620-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입석2길 135	20211229	20091228	마을에 큰 돌이 서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6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610-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학동1길 138-22	20211229	20090401	서당골에서 글 공부를 하였기에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70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752-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735-16	20211229	20091228	가북면 용암리를 지나 해인사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71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군암리 382-1, 382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옹양로 2065-32	20211229	20091228	행정구역 옹양을 이용하여 옹양로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7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218-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1742	20211229	20091228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7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294-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중앙농로길 99-18	20211229	20090401	예로부터 불려져 내려오는 기존 도로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7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227-7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773-168	20211229	20091228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7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85-58, 1485-15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75	20211229	20091228	1994년 거창읍 시가지 간선도로명 결정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7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25-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내당길 179	20211229	20090401	내당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77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433-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장백길 154	20211229	20090401	마을 앞을 흐르는 위천천 주변에 긴 모래밭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7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658-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목동1길 113-29	20211229	20090401	옛날 먹을 만들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7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203-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거차2길 95-101	20211229	20090401	조선초기에 생긴 거차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80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730-9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길 252-14	20211229	20090401	행정구역명(강천)을 이용하여 강천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8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001-3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141-172	20211229	20090401	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8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973-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계수나무길 53-8	20211229	20090401	달속의 계수나무 모양이라 이름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8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674-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면동길 210-132	20211229	20090401	마을이 잠자는 소의 형국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8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196-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34-30	20211229	20090401	마을 모양이 도장과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156-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길 50	20211229	20090401	행정구역명(강천)을 이용하여 강천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8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112-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1길 103-11	20211229	20090401	마을에 척법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8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 254-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1길 97	20211229	20091228	술黍이 울창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88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656-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942	20211229	20091228	송계사를 지나 고계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8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214-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088-3	20211229	20090702	옛 노선명(황곡+마리면간) 활용	건물번호 부여	
9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1036-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오계길 298	20211229	20090401	남상면 오계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9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132-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752-83	20211229	20091228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9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625-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성락길 222	20211229	20090401	별뿔이 떨어졌던 곳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9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1296-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월여산길 321-18	20211229	20090401	월여산이라는 산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9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702-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769-120	20211229	20090702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안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9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457-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남진2길 10-14	20211229	20090401	진목의 남쪽에 위치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9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773-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오계길 13	20211229	20090401	남상면 오계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9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37-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21-56	20211229	20091228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9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480-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길 328	20211229	20090401	중산마을로 가는 길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99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412-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내탐길 104-15	20211229	20090401	내탐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5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1길 4	20211229	20090401	중산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10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교리 609-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994	20211229	20090702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안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10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398-2, 산131-15, 399-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광주대우고속도로 135	20211229	20160930	국도교통부노선명(제201 5-981호)을 이용하여 명명함	건물번호 부여	
10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487-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6길 23	20211229	20090401	행정구역명 도리가 반영된 여섯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0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572-1, 57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가곡길 210-44	20211229	20090401	옛날 기와집이 많아서 좋은 곳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0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988-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길 157	20211229	20090401	마을 뒷산에 옥잔등에 불을 켜서 걸어놓은 설의 명당자리가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0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607-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1길 143-57	20211229	20090401	행정구역명 석강을 이용하여 붙여진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0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922-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철마길 421-39	20211229	20090401	철마산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0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651-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개금길 161-145	20211229	20090401	금이 많이 나왔다고하여 개금이라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0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274-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고척길 79-24	20211229	20090401	마을 근처에 금상옥척이라는 명당자리가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1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133-3, 1131-1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매산1길 7	20211229	20090401	매화 꽃이 땅에 떨어진 명당자리가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1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072-1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141-337	20211229	20090401	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1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산142-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707-70	20211229	20090401	창밖 숲사이로 비치는 달이 유난히 아름다워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192-2, 19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사동1길 121-1	20211229	20090401	마을 서북 1킬로미터 산골짜기에 분청사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1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22-3, 1622-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보혜길 883-5	20211229	20090401	보혜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15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23-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1길 72-227	20211229	20090401	사신을 영접하고 환송하였으므로 영승이라 하다가 퇴계이황 선생이 이곳을 찾았다가 영승이라 고쳐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1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496-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계수나무길 161-19	20211229	20090401	달속의 계수나무 모양이라 이름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17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632-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867-5	20211229	20090401	창밖 숲사이로 비치는 달이 유난히 아름다워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18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101-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오례길 53	20211229	20090401	조선 말 면우 광종석이 연수사에서 공부할 때 붙였다고 전해지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19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587-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상구송길 11	20211229	20090401	300여년 전 삼척 진짜가 열었다고 하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20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교리 93-8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1044	20211229	20090702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안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12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83-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1길 12	20211229	20090401	양지바른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2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563-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235-23	20211229	20090401	천재가 살았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2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02-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보혜길 862-27	20211229	20090401	보혜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2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593-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하수내길 38	20211229	20090401	마을 곁의 냇물이 마을을 안고 있는 듯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2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01-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37	20211229	20090401	창밖 숲사이로 비치는 달이 유난히 아름다워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2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396-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99-101	20211229	20090401	마을 모양이 도장과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2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047-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길 13-297	20211229	20090401	산수 경치가 좋아서 이름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28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1090-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철마길 546	20211229	20090401	철마산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2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337-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한산1길 56-18	20211229	20090401	마을이 산을 지고 북향으로 자리잡고 있어 겨울에 눈이 오래까지 녹지 않아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0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836-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송림길 292-49	20211229	20090401	신라 때부터 송림사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번리 89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주곡로 190-47	20211229	20091228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728-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711-63	20211229	20090702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 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13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433-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장백길 116-19	20211229	20090401	마을 앞을 흐르는 위천천 주변에 긴 모래밭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507-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노루고개길 17-58	20211229	20090401	노루고개길이라는 옛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13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363-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청수로 944	20211229	20091228	신원면 청수리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3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914-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백계재길 7-5	20211229	20090401	월여산 남쪽 합천군 대병면에 가는 계의 이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7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65-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장자골길 30-70	20211229	20091228	장자골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526-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홍감길 138-5	20211229	20090401	마을 앞에 가마솥 같이 생긴 큰 바위가 있어서 홍가마라 부르던 것에서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354-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196-4	20211229	20091228	양기,음기를 텃골이라한데서 붙여진 법정리명이 반영된 다섯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4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456-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280	20211229	20090702	거창군 가조면과 함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14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615-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하수내길 32	20211229	20090401	마을 결의 넷물이 마을을 안고 있는 듯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42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491-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자하길 174-27	20211229	20090401	고종32년(1896년) 거창부사 홍세영에 의해 붙여졌다고 전해지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4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2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89	20211229	20090401	행정구역명 모동을 이용하여 모동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14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64-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162-42	20211229	20090401	행정구역명 모동을 이용하여 모동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1-1769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2-10호(2012.01.20.)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거창군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25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 웅양정수장 건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A=2,856.0㎡
 - 사업의 규모 : 정수장 1개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4. 사업시행기간 : 2012. 01. 20. ~ 2014. 01. 19.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7.

거 창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대표자 조용병)
- 교섭요구 일자 : 2021. 12. 24.(금)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22. 1. 4. 18:00한)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1. 12. 28. ~ 2022. 1. 4.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출처 : 거창군 행정과 서무담당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 폐기 공 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8.

거 창 군 수

1. 폐기사유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폐지
2.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1. 12. 28.
3.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 양성평등기금 출납원인	2.0cm×2.0cm	

거창군 공고 제2021-180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거창군수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중앙·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규칙상 인용 조문이나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개정 조례 조문: 52개

나. 일괄개정 규칙 조문: 9개

다. 내용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2) 기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 용어 변경

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거창군 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중앙 또는 거창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가) 실과, 기획감사실 ⇒ 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

나) 진주보훈지청장 ⇒ 서부보훈지청장

3. 제정 조례·규칙안: 붙임 1,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는 2022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 055-940-3073/3029

이메일: sun815@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1]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 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중앙·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상 인용 조문이나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개정 조례 조문: 52개

나. 내용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2) 기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 용어 변경

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중앙 또는 거창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가) 실과, 기획감사실 ⇒ 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

나) 진주보훈지청장 ⇒ 서부보훈지청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부서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10조제2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를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사업소장,”을 “담당관·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6조(「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조(「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3조(「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4조(「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6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규정”을 “「거창군 민원처리의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청실과장”을 “본청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8조(「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9조(「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0조(「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제21조(「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리개발위

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22조(「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을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로 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을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로 한다.

제24조(「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의 개정)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5조(「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을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8조(「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조(「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실과장급 이상”를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30조(「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1조(「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경상남도 거창군교육청 교육장”을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경상남도진주보훈지청장”을 “경상남도 서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32조(「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3조(「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4조(「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7조2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제35조(「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제11조제1호 중 “구관장”을 “생활용품 판매장”으로 한다.

제36조(「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7조(「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38조(「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의 개정) 거창군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3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39조(「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40조(「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1조(「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2조(「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3조(「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4조(「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국군기무부대관계자”를 “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으로 한다.

제45조(「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6조(「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47조(「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의 개정)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8조(「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5제1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로 한다.

제49조(「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을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제50조(「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으로 한다.

제51조(「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52조(「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 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해 시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규칙상 인용 조문이나 용어 등을 일괄정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개정 규칙 조문: 9개

나. 내용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2) 기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 용어 변경

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나)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2) 조직개편사항 반영

가) 실과⇒담당관·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부서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 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거창군 자체감사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 중 “실·과”를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거창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법 제28조”를 “법 제35조”로 “법 제172조”를 “법 제192조”로 한다.

제3조(「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조(「거창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제4조에 의한”을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거창군 일상감사규정」”을 “「거창군 일상감사 규정」”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규칙」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8조(「거창군 포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실과”를 “본청 담당관·과”로 한다.

제9조(「거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거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단서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된”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